

제2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5. 9. 2.

임실군의회 의장

1. 개정이유

도로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상위법 인용조항을 정리하고, 별표의 변경사항을 상위법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점용료 산정기준(안 제3조, 별표1)
- 나. 전년대비 10%이상 증가시 점용료 조정산식 개정(안 제4조, 별표2)
- 다. 점용료 징수의 제한 대상 확대(안 제6조)
- 라. 점용료의 반환(신설 안 제7조제2항, 제3항)
- 마. 토지나 건물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 발급(신설 안 제9조제1항)
- 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음(신설 안 제9조제3항)

3.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제66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협의 등 : 기획감사실, 주민복지과 협의
 - 1) 부패영향평가 /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2015.7.15. ~ 2015.8.4.) 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4) 관련법 발췌문

임실군 조례 제 호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3조”를 “제66조”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점용료는 "별표 1"의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2개년이상”을 “2개연도 이상”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별표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의하여”를 ““별표 2”의 점용료조정 산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 “(소액부징수)”를 “(소액 부징수)”로 하고, 제5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임실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①도로법 제6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2 중 “과오 납된날의”은 “과오납된 날의”로, “도로법”은 “국유재산법”으로 하며, “36조의3의”는 “73조에”로 하고, “규정에 의거”는 “따른”으로 하고 “연 8퍼센트의”는 삭제한다.

제8조제2호 중 “당해년도분”을 “해당 연도분”으로,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 후”를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로 한다.

제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중 “지방세”를 “도로법령 및 지방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10조 전단 중 “제40조”를 “제61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1,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제3조 제1항 관련)

(금액의 단위 : 원)

점용물의 종류			기준 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	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개	1년	850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250
	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4,100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2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4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8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2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1,65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2,05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3,1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5,200
		지름 3.0m 초과			7,250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압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지름 0.1m 이하	길이 1미터	1년	300
		지름 0.1m 초과 0.2m 이하			600
		지름 0.2m 초과 0.4m 이하			1,250
		지름 0.4m 초과 0.6m 이하			1,850
		지름 0.6m 초과 0.8m 이하			2,500
		지름 0.8m 초과 1.0m 이하			3,100
		지름 1.0m 초과 2.0m 이하			4,600
		지름 2.0m 초과 3.0m 이하			7,750
		지름 3.0m 초과			10,850
3. 주유소·주차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년	토지가격에 0.05를

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2층인 건축물	1제곱미터		곱한 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4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진입로·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3층 이상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6. 간판(돌출간판을 제외한 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	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20,700
	돌출간판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9,900
	사설안내표지		1개	1년	17,250
	현수막	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	표시면적 1제곱미터	1일	50
		그 밖의 용도			150
	아치	도로횡단	표시면적 1제곱미터	1년	41,400
		그 밖의 것			20,700
7.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일시 점용한 것	점용면적 1제곱미터	1일	150
	그 밖의 것		1년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	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비고

1.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2.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4.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 1,950원→1,900원).
5.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6.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8.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별표 2]

점 용 료 조 정 산 식(제4조제1항 관련)

산출 점용료의 증가율(%)	적용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 이상 20 미만	10	전년도 점용료 × 1.10
20 이상 50 미만	14	전년도 점용료 × 1.14
50 이상 100 미만	18	전년도 점용료 × 1.18
100 이상 200 미만	22	전년도 점용료 × 1.22
200 이상 500 미만	26	전년도 점용료 × 1.26
500 이상	30	전년도 점용료 × 1.30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 관련)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5,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15,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6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2.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가. 초과 점용면적 1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 30,000원 나. 초과면적이 1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 30,000원에 1제곱미터를 넘는 1제곱미터마다 3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 부과되는 금액은 500,000원을 넘을 수 없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1조(목적) ----- 제 6 조 ----- - ----- -- ----- -- ----- -- ----- -----.</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p>	<p>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삭제></p>

① <신설>

② <신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

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① ----- 별표 1의 ----- 따라 -----.

② <삭제>

③ <삭제>

다.

③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길이 및 직경은 미터로 하며,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이상 또는 점용물의 길이가 1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1미만의 단수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 표시면적 등이 1제곱미터미만 또는 점용 길이가 1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까지 산정한다.

④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시지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도로를

④ <삭제>

제4조(점용료의 조정) ① -----

계속하여 2개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다.

제5조(소액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 연도 -----

-- 퍼센트 -----

해당연도-----

----- 별표 2 -----

----- 따라 -----

② <삭제>

제5조(소액 부징수)

-- 따른

제6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①

<삭제>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주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

④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임실군수는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 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 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 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 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이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 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 하여야 한다.

① <신설>

② <신설>

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제7조(점용료의 반환) <삭제>

① 도로법 제63조 및 농어촌도 로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따 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 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 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 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 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 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 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신설>

제7조_2(과오납금의 반환) 과오
납된 점용료 또는 변상금을 반
환하는 경우에는 과오 납된날
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시
행령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
거 연 8퍼센트의 이자를 가산
하여 반환한다.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는 다
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 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

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원상
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
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2(과오납금의 반환)

--
-----<과오납된
날의-----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삭제>

제8조(점용료의 부과, 징수시기)

--
-----.

1 .

--

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점용료
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
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
여야 한다. <신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
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__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③ <신설>

.
2 .

----- 해당 연도

연
----- 해당연도----- 개시 후

제9조(점용료의 징수) ① -----

----- .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
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
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
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
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

도로법령 및 -----.

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

임실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인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 건설과장 이원섭

관련(상위)법령 발췌문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한다. 다만,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